

# 편찬과정을 통해 본 校正本 『醫方類聚』 (世祖本)의 의의

김종석, 차웅석,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An Inquiry into the Significance of the Proofread Version of *Euibangyoochui*(Sejo Edition), Seen from the Compilation Process

Jong-seok Kim, Woongseok Cha, Namil Kim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quire into the significance of *Euibangyoochui, Sejo Edition*. One cannot study *Euibangyoochui, Sejo Edition* firsthand since it does not exist today. Instead, this writer looked into the process by which the *Sejo Edition* had been proofread and the historic figures who led the proofreading process. The quantities of the *Sejong Edition* and *Sejo Edition* have been compared, of which the meaning has also been studied.

1. The compilation of *Sejo Edition* began in 1459(5th year of Sejo), the year King Sejo entrusted the work of proofreading of *Euibangyoochui* to Yang Seong Ji. This was not a continuance from the work of King Sejong, but a whole new business ignited by the will and necessity conveyed by King Sejo himself.

2. King Sejo regarded medicine important and emphasized its practicality. The fact that the 365 volumes of the *Sejong Edition* was reduced to 266 volumes reflects the emphasis put on practicality.

3. Yang Seong Ji, who led the proofreading proces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naging state documents from the time of King Sejo. His compilation, *Euibangyoochui, Sejo Edition*, is a work that can be discriminated from its Chinese counterpart in that it had been proofread.

Key words : *Euibangyoochui, Sejo Edition, Sejo, ang Seong Ji*

### I. 서론

세종대왕은 『의방유취』 간행을 계획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譯臣과 使臣을 장장 3년간(1437-1439) 明京(北京)에서 머물게 하여 조선내외의 의서를 모았고,<sup>1)</sup> 金禮蒙 등 여러 文官과 醫官에게 명하여 3년에 걸쳐(1443-1445) 365권의 草橋本 『의방유취』 (世宗本)<sup>2)</sup>를 완성하였다.<sup>3)</sup>

세조는 1459년(세조 5)에 梁誠之에게 『의방유취』를 교

정하게 하여<sup>4)</sup> 1464년(세조 10)에 校正本 『의방유취』 (世祖本)<sup>5)</sup>가 완성되었다.<sup>6)</sup>

1477년(성종 8)에 3년간의 板刻작업을 거쳐 30질의 266권 264책 初刊本 『의방유취』 (成宗本)<sup>7)</sup>가 나오게 되었다.<sup>8)</sup>

1) 이규종 발행, 『의방유취』 (색인)(11책) 『의방유취』 「발문」, 서울: 동양의과대학, 1965, pp.1-5.

2) 이하 '세종본'이라 한다.

3) 『朝鮮王朝實錄』 世宗 110卷, 27年 10月 27日(戊辰)

4) 『朝鮮王朝實錄』 世祖 18卷, 5年 11月 30日(戊申)

5) 이하 '세조본'이라 한다.

6) 『朝鮮王朝實錄』 世祖 34卷, 10年 9月 8日(戊午)

7) 이하 '성종본'이라 한다.

8) 『朝鮮王朝實錄』 成宗 80卷, 8年 5月 20日(丙戌)

접수 ▶ 2010년 11월 25일 수정 ▶ 2010년 12월 7일 채택 ▶ 2010년 12월 19일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Tel 02-961-0672 Fax 02-961-0671 E-mail southkim@khu.ac.kr

『의방유취』는 세종본, 세조본, 성종본이 나왔으나 임진왜란 때 일본이 약탈해가 그 원본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일본이 약탈해간 성종본 원본은 현재 官内省 圖書寮에 보존되어 있는 圖書寮本 『의방유취』(乙亥活字 原刊本)<sup>9)</sup>가 세계에서 유일하다. 세종본과 세조본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없고 성종본 만이 圖書寮本 『의방유취』(乙亥活字 原刊本)로 남아 있다.<sup>10)</sup>

圖書寮本 『의방유취』(乙亥活字 原刊本)를 底本으로 삼아 간행한 木活字 縮板重刊本 『의방유취』(1852-1861년 약 10년에 걸쳐 喜多村直寬이 간행) 2부가 丙子朝日修好條規(1876)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2부중 하나는 6.25동란 때 없어졌고, 다른 하나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는 延世大本 『의방유취』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의방유취』의 유일본이다. 이 후에 한국과 중국, 대만, 북한에서 발행한 모든 版本은 木活字 縮板重刊本 『의방유취』를 原本으로 하여 출판하였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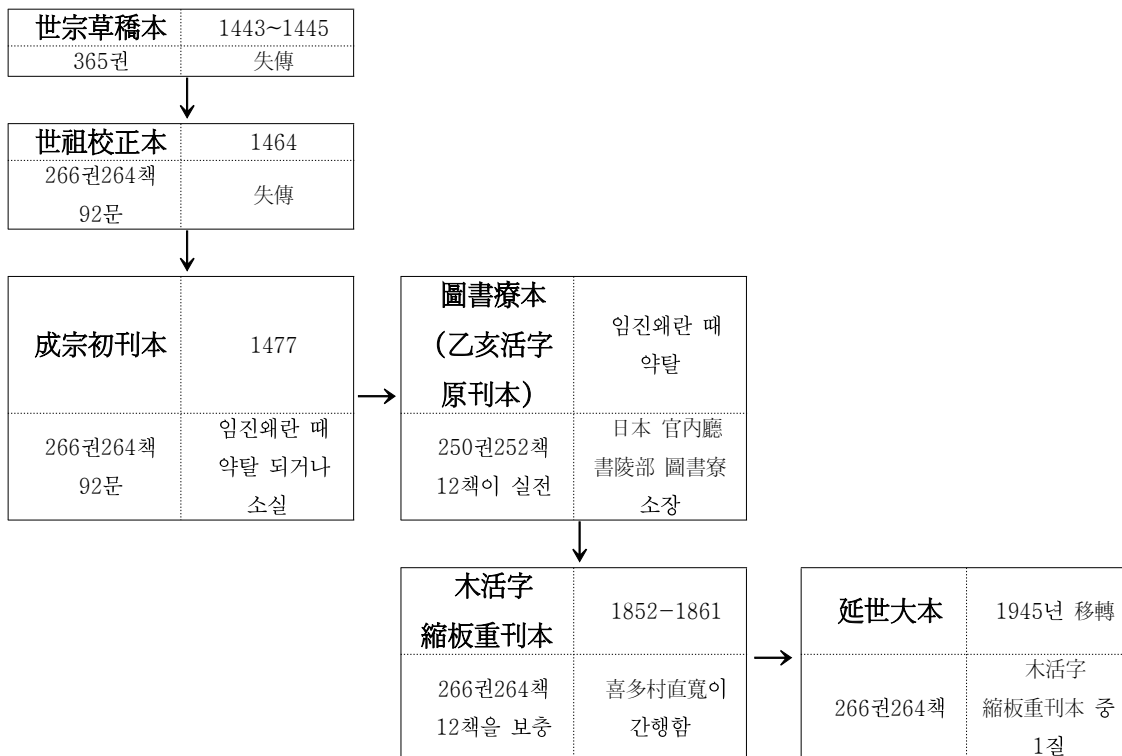
그런데 『의방유취』의 편제상 세종본은 365권이며, 성종본은 266권 264책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성종본은 단지 세조본의 완성된 내용을 板刻 작업을 통해 인쇄한 것<sup>12)</sup>이므로 세조본 또한 266卷 264冊으로 편제상의 변화는 세조본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세조본은 성종본의 모습으로 현재 전해졌으나 세종본은 소실되어 두 판본의 차이점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대신 세조본이 교정되는 과정과 교정을 주도했던 인물을 살펴보고 두 판본의 분량을 고찰하여 세조본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II. 본론

### 1. 세조본 편찬 과정

세종대왕이 3년에 걸쳐(1443-1445) 365권의 『의방유취』 세종본을 완성하였지만,<sup>14)</sup> 세종대에 간행되지는 않았



<표 1> 『의방유취』 주요 판본의 계통도

9) 이는 성종본 30질 중 1질이며 250권 252책으로 일부 소실되었다. 申舞植·崔桓壽, 『醫方類聚』에 대한 版本 연구. 『韓國韓醫學研究』

다.

어서(御書)로 좌승지(左承旨) 이극감(李克堪)에게 유시하기를, “『치평요람(治平要覽)』과 『의방유취』는 모두 세종(世宗) 때에 찬집(撰集)한 책이므로 인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치평요람』은 다시 교열(校閱)해 보니 그릇된 곳이 많이 있지만, 『의방유취』는 반드시 이와 같이 그릇된 곳이 많지 않고 또한 일용(日用)에 간절한 것이 『치평요람』에 미칠 바가 아니므로, 나는 『의방유취』를 먼저 교정(校正)하여 인출(印出)하고, 『치평요람』은 천천히 다시 교정(校正)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는가? ……”<sup>15)</sup>

위의 글을 보면 세조는 세종 때의 책을 인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세종 대왕조(世宗大王朝)에 찬술(撰述)한 『의방유취(醫方類聚)』를 제방(諸方)에 비재(備載)하였지만, 그러나 권질(卷秩)이 호양(浩穰)하여 졸지에 간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간요(簡要)한 방서(方書)를 가지고 분문 강습(分門講習)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17)</sup>

『의방유취』 세종본이 있었지만 그 양이 방대하여 분문강습에 활용하기 어려워 좀 더 간단한 방서를 필요로 했다.

“……『의방유취』도 또한 의서(醫書)의 대전(大全)이므로 일용(日用)에 긴절(緊切)한 것은 진실로 『치평요람』의 미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량(斤兩)의 다소(多少)와 약성(藥性)의 한온(寒溫)에 있어서 만약 조금이라도 틀린 점이 있게 된다면 사람을 해침이 매우 클 것이니, 그것을 교정(校正)하는 일은 마땅히 갑절이나 힘을 써야만 하고 쉽사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정(校正)을 유사(儒士)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臣)이 보건대, 의서(醫書)를 습독(習讀)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두 문리(文理)를 통달(通達)하여 방서(方書)를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 이런 무리들로 하여금 교정(校正)하도록 하고, 원컨대 통유(通儒)로서 의방(醫方)을 아는 사람 1명을 뽑아서 근일에 『병요(兵要)』를 교정(校正)하는 예(例)와 같이 감독하고 거느리게 하여 서로가 검찰(檢察)하도록 해서 상벌(賞罰)을 준다면 반드시 별도로 서국(書局)을 세우고 별도로 능록(廩祿)을 주어 먹도록 하지 않더라도 일은 쉽사리 성취될 것입니다. 신(臣)은 생각하건대, 두 가지 책은 모두 폐지할 수 없다고 여겨지니, 삼가 성상의 재가(裁可)를 바랍니다.”<sup>18)</sup>

『의방유취』 간행을 위해 교정이 필요했으나 그 양이 방대하고 교정 작업에 신중을 기해야 했으므로 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좌승지(左承旨) 이극감(李克堪)이 상서(上書)하여 통유(通儒)로서 의방(醫方)을 아는 사람을 감독으로 두고, 의서를 습독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정토록 건의를 하였다.

행 대호군(行大護軍) 양성지(梁誠之)에게 명하여 『의방유취』를 교정(校正)하게 하였다.<sup>19)</sup>

세조는 이에 동의하고 1459년(세조 5)에 행 대호군(行大

護軍) 양성지(梁誠之)에게 『의방유취』 교정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충순당(忠順堂)에 나아가서 이조(吏曹)·병조(兵曹)를 불러서 주의(注擬)를 하도록 하여, 양성지(梁誠之)를 이조 판서(吏曹判書)로, 한계미(韓繼美)를 서원군(西原君)으로, 최영린(崔永潁)을 행사헌 장령(行司憲掌令)으로 삼고, 『무경(武經)』을 주석(註釋)하고 『의서유취(醫書類聚)』를 편찬(編纂)한 사람들은 모두 1자급(資級)을 올렸는데, 당상관(堂上官)은 아들·사위·조카에게 대신 가자(加資)하였다.<sup>20)</sup>

그리하여 1464년(세조 10)에 세조본이 편찬되었다. 세조

院論文集』第3卷 第1號 p.5.

10) 안상우,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p.64.

11) 申舞植·崔桓壽, 『醫方類聚』에 대한 版本 연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第3卷 第1號 pp.12-13.

12) 『朝鮮王朝實錄』成宗 80卷, 8年 5月 20日(丙戌)

13) 세조본의 권 수와 책 수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안상우,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p.64.에서는 성종본과 같은 편제로 세조본을 기록하고 있다.

14) 『朝鮮王朝實錄』世宗 110卷, 27年 10月 27日(戊辰)

15) 『朝鮮王朝實錄』世祖 17卷, 5年 9月 1日(庚辰)

御書示左承旨李克堪曰: 『治平要覽』、 『醫方類聚』, 皆世宗時撰集之書, 不可不印. 然 『治平』更校之, 則誤處多, 若 『類聚』, 則不必如是之多誤矣, 且切用, 非 『治平』之所及, 予欲先校 『類聚』印出, 『治平』則徐徐更校, 如何?

이하 조선왕조실록 번역은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사이트를 참조함.

16) 『의방유취』는 『朝鮮王朝實錄』에 9회 나온다. 기록 중 『醫方類抄』· 『醫書類聚』라는 『醫方類聚』와는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기록 내용으로 보아 『抄』는 “聚”, “書”는 “方”의 誤記로 보여져 다 같은 『의방유취』이다.

申舞植·崔桓壽, 『醫方類聚』에 대한 版本 연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第3卷 第1號 p.5.

17) 『朝鮮王朝實錄』世祖 12卷, 4年 4月 6日(癸亥)

禮曹啓: 世宗大王朝所撰 『醫方類抄』備載諸方, 但卷秩浩穰, 卒難刊行, 姑將簡要方書分門講習. 從之.

18) 『朝鮮王朝實錄』世祖 17卷, 5年 9月 4日(癸未)

『醫方類聚』亦醫書之大全, 切於日要, 固非 『治平』之所及也. 然以斤兩之多少、藥性之寒溫, 若少有錯誤, 則害人甚大, 其校正之功, 當倍著力, 不可容易. 然其校正, 不必備士. 臣觀醫書習讀諸人, 皆通曉文理, 熟知方書, 可令此輩校正, 乞選通儒知醫方者一人監領如近日 『兵要』校正之例, 互相檢察, 施其賞罰, 則不必別立書局、別酌飲啖, 而功亦易就. 臣謂二書不可皆廢, 伏惟聖裁. 御書答之曰: “甚當. 非卿不能如是, 委卿布置.”

19) 『朝鮮王朝實錄』世祖 18卷, 5年 11月 30日(戊申)

命行大護軍梁誠之校正 『醫方類聚』.

20) 『朝鮮王朝實錄』世祖 34卷, 10年 9月 8日(戊午)

戊午(御忠順堂, 召吏、兵曹令注擬. 以梁誠之爲吏曹判書, 韓繼美西原君, 崔永潁行司憲掌令, 註武經及撰 『醫書類聚』人並加一資, 堂上官代加子壻弟姪.

가 양성지에게 『의방유취』 교정의 감독을 맡긴 1459~1464의 약 5년 동안의 성과였다.

申舞植·崔桓壽는 『조선왕조실록』 문종 10卷, 1年 10月 9日(甲戌)의 글을 근거로 세조본이 1451년(문종1)~1464(세조10)에 걸쳐서 완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sup>21)</sup>, 이는 잘못된 것이다.

에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손(李承孫)이 아뢰기를, “장인 심 영의정(沈領議政)에게 이미 직첩(職牒)을 돌려주었으니, 시호(諡號)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정부(政府)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종 대왕(世宗大王)의 『상장의례(喪葬儀軌)』를 베껴 쓴 충순위(忠順衛)에게 『자치통감(資治通鑑)』을 베껴 쓴 사람의 예에 의하여 자금(資級)을 더하여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에는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모두 자급을 더하여 주어서 폐풍을 이루었다.” 하고, 이어서 도승지(都承旨) 이계전에게 명하여 전례를 상고하게 하였다. 이계전이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의방유취』와 『병요』를 베껴 쓴 사람(書寫者)에게 모두 특지(特旨)로 산관(散官)의 직책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는 산관직을 제수하지 말라.” 하였다.<sup>22)</sup>

이를 보면 『의방유취』의 書寫者에게 상을 내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세조본이 제작되기 시작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단지 세종본의 필사본을 만들기 위한 필사작업일 뿐이다.

……서사인은 각기 당번(當番)하는 자 중에서 글씨 잘 쓰는 자 5, 6인씩 가려서 번드는 사람끼리 서로 교대하여 서사(書寫)하게 하면 일과 효과에 손실이 없을 것이오며, 그 중에 특히 공로가 있는 자는 의복이나 활이나 화살 등의 물건으로 상을 줄 것이요, 도(到)를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합니다.……<sup>23)</sup>

“서사관(書寫官) 등은 벌은 있으나 상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삼가서 잘 쓰는 자가 적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주본(奏本)·자문(咨文)·표문(表文)·전문(箋文)·방물장(方物狀) 및 부분(副本) 중에 20도(道)를 베껴, 틀리거나 그릇된 것이 없는 자에게는 이문 제술(吏文製述)의 1등(一等)의 예(例)에 의하여 1고(考)를 주어 권려(勸勵)하게 하소서.”<sup>24)</sup>

書寫者에 대한 위의 글을 살펴보면, 세종본이나 세조본 성종본을 완성한 자들과는 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이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문종 1년을 전후로 한 필사작업은 세조본의 편찬 과정과는 별개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조본 편찬의 시작은 세조가 양성지에게 『의방유취』 교정의 감독을 맡긴 1459년(세조 5)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365권의 세종본이 교정을 통해 266권 264책 92문의 세조본으로 축약되는 과정에서 교정을 주도한 인물 누구이며 그 인물의 사상에 따라 축약 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논의와 같이 세조본 편찬의 시작은 世祖朝의 일이며 이는 世宗朝에서 이어지는 작업의 연속이 아니라 세조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세조의 사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세종본의 교정이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 2. 교정에 관여한 주요 인물과 사상

### 1) 세조의 사상

세조는 학문에 뜻이 깊었고 성리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천문·역(易)·지리·의(醫)·산법(算法) 등 각종 잡학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sup>25)</sup>

임금이 집현관(集賢官)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마땅히 실학(實學)에 힘써야 하며 실학이 근본이다. 국가는 사장(詞章)을 쓰기에 간절한 까닭으로 부득이 사장을 써서 사람을 취하나, 스스로 하는 도(道)에 있어서는 실학을 버리는 것이 옳지 않다. 오늘 너희들이 경서를 강론함에 창달(暢達)한 자가 있지 않으니, 또한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다. 내 너희들로 하여금 바라는 바에 따라 『사서(四書)』·『오경(五經)』 중 각각 1서(書)를 읽게 하고 내가 때때로 친강(親講)하려고 한다.”<sup>26)</sup>

21) 申舞植·崔桓壽, 『醫方類聚』에 대한 版本 연구. 『韓國韓醫學研究 院論文集』 第3卷 第1號 p.5.

22) 『朝鮮王朝實錄』 文宗 10卷, 1年 10月 9日(甲戌)

禮曹判書李承孫啓: “外舅沈領議政, 既還職牒, 宜贈諡號.” 命政府議之. 又啓曰: “世宗大王 『喪葬儀軌』, 書寫忠順衛, 依 『資治通鑑』 書寫人例, 加資何如?” 上曰: “邇來雖小事, 率皆加資, 以成弊風.” 仍命都承旨李季甸, 考前例. 季甸啓曰: “前此 『醫方類聚』 及 『兵要』 書寫者, 皆以特旨, 加散官職.” 上曰: “此人等, 勿除散官職.”

23) 『朝鮮王朝實錄』 世宗 117卷, 29年 7月 1日(辛卯)

…… 臣等以謂書寫之人, 令各於番中, 擇能書者五六人, 對番相遞書寫, 則事功亦不廢矣. 於其中特有功勞者, 則賞以衣服弓矢等物, 不宜給到也. ……

24) 『朝鮮王朝實錄』 世祖 26卷, 7年 12月 5日(辛未)

書寫官等有罰無賞, 故勤謹善寫者鮮少, 請自今奏本、咨文、表、箋、方物狀及副本中寫二十道無違誤者, 依吏文製述一等例, 給一考勸勵.

25) 황임경·황상익, 세조의 『의약론』에 관한 연구, 의사학 제12권 제2호, 2003, p.98.

26) 『朝鮮王朝實錄』 世祖 3卷, 2年 4月 15日(甲寅)

上謂集賢官曰: “人當務實學, 實學根本也. 國家以詞章切於用, 故不得已用此取人, 在自爲之道, 捨實學不可也. 今日汝等論經, 無有暢達者, 亦可自愧. 予欲使汝等, 隨所欲就四書、五經中各讀一書, 予時時親講.”

세조가 친강의 의지를 밝힌 것은 그가 상당한 학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아울러 그의 학문 진흥책이 매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였음을 말해 준다.<sup>27)</sup>

“무릇 유자(儒者)라 하더라도 천문(天文)·지리(地理)·의약(醫藥)·복서(卜筮)를 모두 알아야만이 비로소 통유(通儒)라고 이를 수 있는데, 너는 그런 방면에 능한가?”<sup>28)</sup>

‘잡학’(雜學)이라고 할 수 있는 천문·지리·의약을 알아야 제대로 된 유학자라고 한 그의 말에서 국사(國事)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용적 학문을 강조한 자세를 엿볼 수 있다.<sup>29)</sup>

잡학 중에서도 의약에 관해 역대 어느 왕보다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세조는 의서의 학습을 권장하여 궁내에서 많은 의서를 강연케 했으며 직접 친강(親講)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각종 의방에 능통하여 신하, 의관들과 처방에 관해 많은 논의를 벌였다. 그리고 의약에 대한 그의 관심은 1463년(세조 9) 12월에 반포된 『의약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드러난다. 『의약론』은 세조가 생각한 치병의 원리와 의원의 자세를 논한 글이다. 이것은 왕이 직접 의약에 관한 글을 써서 반포했다는 점에서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세조의 『의약론』이 완성·반포되는 데 관여한 한계희, 노사신, 임원준 등은 세조의 측근으로 『의방유취』(1445)의 편찬에도 참여한 당대 일급의 유의(儒醫)들이었다.<sup>30)</sup>

대저 소업(所業)은 많음이 귀중하지 아니하고 정(精)함이 귀중하므로, 옛적 유자(儒者)는 치경(治經)하기를 각각 1서(書)로써 오로지하였는데, 하물며 의술은 인명(人命)에 관계되는 것이니 더욱 정(精)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의술은 부자가 서로 이어서 3대에 이르지 않았으면 조제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옛 사람은 의약에 신중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는데, 지금 의원(醫員)은 방서(方書)가 호번(浩繁)하여 정숙(精熟)함을 얻지 못하고, 증세에 임하여 약을 써서 그 요점을 알지 못하니, 그 업(業)이 많고 정밀하지 못한 것이 부문을 나누어 전문(專業)함만 같지 못하다. 또 의서란 박고(博古)하여 정민(精敏)하지 않은 자는 통호(通曉)하기가 쉽지 않으니, 아울러 문관을 선임하여 겸습(兼習)함이 가할 것이다.<sup>31)</sup>

또한 세조는 습독관을 통해 의원들의 의서 학습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에조에서 아뢰기를, “세종 대왕조(世宗大王朝)에 찬술(撰述)한 『의방유취(醫方類抄<sup>32)</sup>』를 제방(諸方)에 비제(備載)하였지만, 그러나 권질(卷秩)이 호양(浩穰)하여 졸지에 간행하기 어려우니, 우선 간요(簡要)한 방서(方書)를 가지고 분문 강습(分門講習)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sup>33)</sup>

실용성을 강조하는 세조가 보기에 방대한 양의 세종본은 직접 친강(親講)하거나 의원들에게 습독시키기에는 불편했음을 크게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세종본을 그대로 인쇄하지 않고 교정 작업을 통해 실용적인 책이 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365권이던 세종본이 266권 264책 92문으로 양적인 면에서 크게 축약이 되었을 것이다.

## 2) 양성지(梁誠之)<sup>34)</sup>의 사상

27) 황임경·황상익, 세조의 『의약론』에 관한 연구, 의사학 제12권 제2호, 2003, p.99.

28) 『朝鮮王朝實錄』世祖 33卷, 10年 4月 27日(戊申)

凡爲儒者, 盡曉天文、地理、醫藥、卜筮而後始可謂之通儒, 汝其能之乎?

29) 황임경·황상익, 세조의 『의약론』에 관한 연구, 의사학 제12권 제2호, 2003, p.99.

30) 황임경·황상익, 세조의 『의약론』에 관한 연구, 의사학 제12권 제2호, 2003, p.97.

31) 『朝鮮王朝實錄』世祖 33卷, 12年 3月 11日(戊申)

大抵所業, 不貴乎多, 貴乎精。古之儒者治經, 各專一書, 況醫術人命所關, 尤不可不精。故「醫不三世, 不服其藥。」古人於醫藥, 慎重如此, 今者醫員輩所業, 方書浩繁, 不得精熟, 其於臨證投藥, 罔知其要, 與其多而不精, 莫若分門專業。且醫書, 非博古精敏者, 未易通曉, 并選文官, 兼習可也。

32) 『의방유취』는 『조선왕조실록』에 9회 나온다. 기록 중 『醫方類抄』·『醫書類聚』라는 『醫方類聚』와는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 기록 내용으로 보아 “抄”는 “聚”, “書”는 “方”의 誤記로 보여져 다 같은 『의방유취』이다.

申舞植·崔桓壽, 『醫方類聚』에 대한 版本 연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第3卷 第1號 p.5.

33) 『朝鮮王朝實錄』世祖 12卷, 4年 4月 6日(癸亥)

禮曹啓: 世宗大王朝所撰『醫方類抄』備載諸方, 但卷秩浩穰, 卒難刊行, 姑將簡要方書分門講習。從之。

34) 『朝鮮王朝實錄』成宗 142卷, 13年 6月 11日(戊申)

行中樞府事梁誠之卒。輟朝、弔祭、禮葬如例。誠之字純夫, 南原人, 贈議政府右贊成九疇之子也。正統辛酉, 中進士、生員, 又中文科第二人, 初授慶昌府丞, 遷成均(注) [主] 簿。壬戌, 拜集賢殿副修撰, 累陞至直提學。……庚辰, 陞嘉善同知中樞院使, 辛巳, 陞嘉靖同知中樞府事。癸未, 誠之請設弘文館, 以藏書籍, 上從之, 以誠之爲提學加資憲。甲申, 中求賢試, 世祖謂曰: “人皆以卿爲迂闊, 然我與卿相愛。”除吏曹判書, 尋拜司憲府大司憲。丙戌, 中拔英試, 戊子, 參修『世祖實錄』。成化己丑, 輔工曹判書, 辛卯, 賜純誠明亮佐理功臣號, 封南原君。丁酉, 復除大司憲, 爲臺官所駁, 遞爲工曹判書, 辛丑, 拜知中樞府事。上會二品以下堂上文臣于殿庭, 試詩、論各一篇, 誠之居魁, 超拜崇政, 至是卒, 年六十八。

梁誠之(1415-1482)의 자(字)는 순부(純夫)이고, 남원인(南原人)이며, 증 의정부 우찬성(贈議政府右贊成) 양구주(梁九疇)의 아들이다. 1441년(세종 23년)에 진사(進士)·생원(生員) 시험에 합격하고, 또 문과(文科)에 제 2인으로 합격하여 처음에 경창부승(慶昌府丞)에 제수되었다가, 성균 주부(成均主簿)로 옮겼다. 1442년(세종 24년)에 집현전 부수찬(集賢殿副修撰)에 임명(任命)되었다가 여러 번 승진되어 직제학(直提學)에 이르렀다. 1460년(세조 6)에 가선대부(嘉善

양성지는 세조의 총애를 받았으며,<sup>35)36)</sup> 세조조부터 국가 문헌관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집현전은 세조 2년에 사육신사건과 관련하여 혁파되었는데, 그 기능은 예문관에 소속되었다.<sup>37)</sup> 이듬해 양성지는 국가의 서적을 보존토록 하는 상소를 올린다.<sup>38)</sup> 이에 세조는 양성지로 하여금 예문관에 소장된 책을 기록하도록 하고,<sup>39)</sup> 후에 예문관의 제조로 삼아서 서적의 간행을 맡겼다.<sup>40)</sup> 양성지는 또한 서적의 보관을 위한 규장각 설치의 건의하기도 한다.<sup>41)</sup> 양성지는 장서각인 홍문관의 설치를 건의했고, 세조는 이를 승낙하였다.<sup>42)</sup> 이 후에도 서적을 다량으로 인출(印出)하여 널리 배포하였으며, 장서각(藏書閣)을 확충하기도 하여 성종 7년에는 홍문관의 대제학이 된다. 국가서적의 출판, 장서(藏書) 등의 기능을 분리하여 담당하는 기능으로 출발한 기관인 홍문관의 대제학이라는 직무를 맡은 양성지는 국가 출판물의 관리를 맡은 총책임자였다.<sup>43)</sup>

그의 문집을 모아놓은 『訥齋集』을 살펴보면 그의 사상이 잘 드러난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한 면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대담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44)</sup>

- (1) 우리의 역사를 알고 우리의 역사에서 배우는 슬기를 지녀야 한다.<sup>45)</sup>
- (2) 우리의 주체적인 풍속을 보존해야 된다.<sup>46)</sup>
- (3) 문묘(文廟)에 우리의 선현을 많이 배향(配享)하기를 주장했다.
- (4) 국가의 체통을 세우기 위한 종종의 제언을 했다.
- (5) 우리 민족공동체에 특출한 공적이 있는 분은 사당에 모셔놓고 제사로 받들자는 제의를 했다.

양성지는 동방지국인 조선이 중국과는 지리적으로나 문화, 역사적으로도 구별되는 주체로 보고 민족의 주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상을 지닌 그가 관여한 편찬물들은 조선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되었다. 경학, 사학, 문학, 법률, 군사, 지리, 의학, 음악, 농법 등 조선전기의 모든 편찬물들은 그와 관계를 지니고 있다.<sup>47)</sup>

세조본 『의방유취』 또한 양성지의 민족주의적 사상 위에 중국 의서와 차별되는 내용으로 교정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大夫)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使)에 승진되었다가, 1461년(세조 7)에 가정대부(嘉靖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올랐다. 1463년(세조 9)에 양성지가 홍문관(弘文館)을 설치하여 서적(書籍)을 간직할 것을 청하니, 임금(世宗)이 그대로 따르고, 양성지를 제학(提學)으로 삼고, 자헌대부(資憲大夫)를 가(加)하였다. 1464년(세조 10)에 구현시(求賢試)에 합격하니, 세조가 일러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경(卿)을 오환(迂闊)하다고 하나, 나는 경과 서로 아진다.’ 하고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제수했다가 얼마 후에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임명하였다. 1466년(세조 12)에 발영시(拔英試)에 합격하고, 1468년(예종 즉위년)에 『세조실록(世祖實錄)』 찬수(撰修)에 참여하였다. 1469년(예종 원년)에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전임(轉任)되고, 1471년(성종 2)에 순성 명랑 좌리공신(純誠明亮佐理功臣)의 호(號)를 하사받고, 남원군(南原君)으로 봉하였다. 1477년(성종 8)에 다시 대사헌(大司憲)에 제수되었다가, 대관(臺官)의 논박(論駁)을 받고서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바뀌고, 1481년(성종 12)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임금이 2품 이하의 당상(堂上) 문신(文臣)을 전정(殿筵)에 모아서 시(詩)와 논(論) 각 1편씩을 시험하였는데 양성지가 장원을 차지하였으므로 승정대부(崇政大夫)로 초배(超拜)되었다가 이에 이르러 졸(卒)하니, 나이 68세였다.

35) 『朝鮮王朝實錄』 世祖 4卷, 2年 6月 2日(庚子)

有人告集賢殿直提學梁誠之有懼色, 必有陰事, 上曰: “此時何人不懼? 況誠之學司被繫, 其無懼心乎? 誠之從我久, 必無是事。” 具致寬曰: “誠之若有他心, 近日輪對, 其肯進密策乎?” 申叔舟等曰: “誠之與柳誠源等構嫌, 國人所知。” 上曰: “予亦知之。” 又曰: “此事予已得情。昔有告房玄齡反, 太宗即斬告者。今恐防言者, 但斥之, 不可罪也。” 遂令致寬召誠之, 徐言其事, 使不驚怖, 誠之承命感激。

어떤 사람이 고(告)하기를, “집현전(集賢殿) 직제학(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두려워하는 빛이 있으니, 반드시 음모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런 때에 어느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더구나 양성지로 말하면 온 관사(官司)의 사람들이 잡혀 갔으니, 어찌 두려운 마음이 없겠느냐? 양성지는 나를 따를 지 오래이니, 반드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구치관(具致寬)이 말하기를, “양성지에게 만약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근일에 윤대(輪對)할 적에 그가 어찌 밀책(密策)을 즐겨 올렸겠습니까?” 하니, 신숙주(申叔舟) 등이 말하기를, “양성지가 유성원(柳誠源) 등과 혐의가 저 있는 것은 온 나라 사람이 알고 있는 터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알고 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서는 내 이미 실정을 알았다. 옛날에 방형령(房玄齡)이 태종(太宗)을 배반하였다고 고발한 자가 있었을 때에 즉시 고발한 자의 목을 베었다. 지금은 말하는 자를 막을까 염려하여 다만 그 말을 물리칠 뿐이요, 죄를 수는 없다.” 하고, 드디어 구치관을 시켜 양성지를 불러 천천히 그 일을 말해 주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니, 양성지가 명을 받고 감격하였다.

36) 『朝鮮王朝實錄』 成宗 142卷, 13年 6月 11日(戊申)

一日世祖於常參設酌, 誠之啓曰: “恐傷聖體。請須節酒。” 世祖曰: “惟汝愛我。” 命加通政。是年罷集賢殿, 遷世子左輔德。朴彭年等誅, 人告誠之憂恐, 必與其謀。世祖曰: “當此時, 人誰不懼? 誠之保無此事。”

어느 날 세조(世祖)가 상참(常參)에서 술자리를 베푸니, 양성지가 아뢰기를, ‘성체(聖體)를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절주(節酒)하도록 하소서.’ 하니 세조가 이르기를, ‘오직 그대가 나를 아진다.’ 하고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가(加)하도록 명하였다. 이 해에 집현전이 파(罷)해지자, 임금이 세자좌보덕(世子左輔德)으로 옮기게 하였다. 박팽년(朴彭年) 등이 주살(誅殺)되자, 사람들이 ‘양성지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니, 반드시 그들과 더불어 공모했을 것입니다.’ 하니, 세조가 이르기를, ‘이 때를 당하여 사람으로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양성지는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을 보증한다.’ 하였다.

37) 『朝鮮王朝實錄』 世祖 4卷, 2年 6月 6日(甲辰)

命罷集賢殿, 停經筵, 其所藏書冊, 竝付藝文館掌之。

38) 『朝鮮王朝實錄』 世祖 7卷, 3年 3月 15日(戊寅)

### 3. 세종본과 세조본 비교 고찰

#### 1) 분량

권수로만 본다면 세종본 365권에서 세조본 266권으로 99권이 줄었기에 축약이 되면서 기존의 내용이 소실되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종본의 凡例를 살펴보면 내용을 정리하는 가운데 필요한 정보는 그대로 두고 불필요한 내용만이 삭제, 요약, 재편되면서 크게 내용이 압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8)</sup>

<표 2> 『醫方類聚』의 凡例

<p>一. 모든 인용서적은 저작 연대순으로 부문을 갈라 편입시키고 작은 제목은 가르지 않았다. 예를 들면 『風門』에 『金匱方』의 『風門』을 다 쓴 다음 다른 의서의 『風門』을 썼다.</p> <p>一. 한 부문에 한 가지 처방이 거듭 나오는데 그의 적응증·약재·먹는 방법이 다른 점이 없으면 처음 쓰인 처방 밑에 아무 책에도 같다고 썼다. 내용이 대체는 같고 조금 다를 때에는 그 다른 부분만을 따서 첨부했으며 조금만 같고 대부분이 다른 때에는 처방 전체를 첨부하였다.</p> <p>一. 모든 문헌의 이론에 대하여 중복되는 것은 빼고 어느 책과 같다고만 하였으며 내용은 쓰지 않았다. 혹 그 이론이 중간은 같으면서 처음과 끝부분이 조금 다를 때에는 처음의 다른 부분을 쓰고 다음에 같은 부분은 “云云”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끝부분의 다른 것을 썼다.</p> <p>一. 모든 부문의 병증에 대한 이론과 처방을 다 쓴 다음에 食治法·禁忌·導引法을 썼다.</p> <p>一. 한 가지 처방에 대한 적응증이 여러 가지 병을 겸한 때에는 각 부문에 그 처방을 다 쓰지 않고 다만 본래 그 처방이 기재되어 있는 부문에만 그 처방을 썼다.</p> <p>一. 예를 들면 『金匱方』의 礬石湯은 본래 『風門』에 있는데 그 적응증에 脚氣가 가슴으로 치미는 것도 치료한다고 했으나 『金匱方』에 의하여 『風門』에만 썼다. 다른 것도 이와 같다.</p> <p>一. 대체 같은 처방이 다시 나오는 것은 처음 나오는 곳에만 썼다. 만약 『得效方』이나 『玉機微義』 등과 같이 꼬리를 물고 연달아 쓰일 때에는 본방에도 다만 처방명만 쓰고 주해에 처방은 아무 책이나 부문에 있다고 썼다.</p> <p>一. 모든 처방 부문에 ○을 친 것은 한 자씩 쓸 만한 공간을 두고 썼다. 덧붙여 기재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명칭을 처음 쓸 때에 그 위에 ○을 쳐서 원문과 구별하였다. 약재 밑에 덧붙여 주해를 쓸 때에도 모두 ○을 썼다.</p> <p>一. 한 처방 안에 다른 책의 것을 덧붙여 기록할 때는 처음 쓰는 데만 책명을 제대로 다 쓰고 계속하여 쓰는 데는 책명을 약해서 간단하게 썼다. 예를 들어 처음 쓰는 데는 『巢氏病源』이라고 쓰고 그 다음 계속 쓰는 데는 『巢源』이라고만 썼다.</p>
--

그렇지만 성종본의 凡例가 세종본의 편찬부터 적용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세조본의 교정과정에서만 적용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세종대왕이 중국 明代以前の 醫籍 150여권<sup>49)</sup>의 책을 수

관서운관사(判書雲觀事) 양성지(梁誠之)가 상언(上言)하였는데, 상언은 이러하였다. …… “국가의 서적(書籍)을 간직하는 조목입니다. 대개 서적은 간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조(前朝) 때에는 서적을 산 속에 있는 절에 간직하였는데, 본조(本朝)에 이르러 비로소 3개의 사고(史庫)를 충주(忠州)·성주(星州)·전주(全州) 등 고을에 설치했으니, 생각이 매우 주밀(周密)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臣)이 듣건대, 간직한 것이 반드시 모두가 비서(祕書)가 아니므로, 반드시 비서(祕書)가 모두 간직되지 아니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원컨대 3개의 사고(史庫) 안에 간요하지 않은 잡서(雜書)는 모두 찾아내도록 하고, 선원록(璿源錄) 및 승정원(承政院)·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예문관(藝文館)·춘추관(春秋官)의 문서(文書)를 취(取)하여 책 3건(件)을 선택(選擇)하도록 하고, 또 동국(東國)에서 찬술(撰述)한 여러 서책(書冊)과 제자백가(諸子百家)·문집(文集)·주군(州郡)의 도적(圖籍)도 모두 구하여 사들이고, 또 1건(件)은 『송사(宋史)』·『원사(元史)』 등의 책과 같이 모두 전하여 베껴 써서 3개의 사고(史庫)에 간직하도록 하소서.”하니, 어서(御書)에 이르기를, “이는 유사(有司)에게 독려(督勵)하겠다.”하였다.

39) 『朝鮮王朝實錄』 世祖 9卷, 3年 9月 18日(己卯)

傳于承政院曰: “予於教育儒生, 委之學官, 無所勸勵, 深以爲嫌. 念諸生書籍難得, 令梁誠之錄藝文館所藏書, 將以刊行.”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유생(儒生)을 교육하는데, 학관(學官)에게만 위임하고 권려(勸勵)한 바가 없었음을 깊이 혐의쩍게 여긴다. 제생(諸生)들이 서적을 얻기가 어려울까 생각하고 양성지(梁誠之)로 하여금 예문관에 소장한 서적을 기록케 하여 장차 간행(刊行)하려고 한다.”

40) 『朝鮮王朝實錄』 世祖 27卷, 8年 1月 28日(癸亥)

初於藝文館聚文臣及成衆官等, 以行上護軍梁誠之爲提調, 磨勘書籍.

처음에 예문관(藝文館)에서 문신(文臣)과 성중관(成衆官) 등을 모아서, 행 상호군(行上護軍) 양성지(梁誠之)를 제조(提調)로 삼아 서적(書籍)을 간행(刊行)하게 하였었다.

41) 『朝鮮王朝實錄』 世祖 30卷, 9年 5月 30日(戊午)

上曰: “在世宗朝書籍散亂, 今雖整齊, 藏之以備考閱.” 誠之進書, 其書曰: 竊觀歷代書籍, 或藏於名山, 或藏於秘閣, 所以備遺失而傳永久也. …… 奉安于麟趾堂東別室, 名曰奎章閣, 又諸書所藏內閣名曰秘書閣, 皆置大提學, 提學, 直閣, 應教等官, 堂上以他官帶之, 郎廳以藝文祿官兼差, 俾掌出納.

임금이 양성지(梁誠之)에게 말하기를, “서책(書冊)을 상고하고 교정(校正)하는 일은 어찌 되었느냐?” 하니, 양성지가 말하기를, “이미 마쳤습니다.”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서적(書籍)이 산란(散亂)하여 이제 비록 정제(整齊)하였더라도 이를 간직하여서 고열(考閱)에 갖추게 하라.”하였다. 양성지가 드디어 글[書]을 올리니, 그 글에 이르기를, “그즉이 역대(歷代)의 서적을 보건대, 혹 명산(名山)에 간직하고 혹 비각(秘閣)에 간직하는 것은 유실(遺失)을 대비하여 영구히 전하는 소이(所以)입니다. …… 인지당(麟趾堂)의 동쪽 별실(別室)에 봉안(奉安)하여 규장각(奎章閣)이라 이름하고, 또 제서 소장(諸書所藏)의 내각(內閣)을 비서각(祕書閣)이라 이름하여, 모두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직각(直閣)·응교(應教) 등의 관직[官]을 두어, 당상(堂上)은 다른 관직을 겸대(兼帶)하게 하고, 낭청(郎廳)은 예문 녹관(藝文祿官)을 겸차(兼差)하여 출납(出納)을 관장하게 하소서.”

42) 『朝鮮王朝實錄』 世祖 31卷, 9年 11月 17日(辛未)

辛未/初, 同知中樞院事梁誠之議立崇文殿, 弘文館皆設兼官, 以掌出納. 至是, 上曰: “若立崇文殿, 則後世人主或有好製詩文, 專事述作者, 不可從也. 以藏書閣爲弘文館則可. 其設兼官, 大提學一, 提學一, 直提學一, 直館一, 博士一, 著作郎一, 正字二.”

처음에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승문전(崇

집하고 모아 엮어서 세종본 365권을 완성하였는데, 권수로만 본다면 두 배가 넘는 방대한 양이 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내용이 두 번 이상 인용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세종본의 목적이 당시 현존하는 방서의 수집에 있었기에 양이 많더라도 모든 내용을 담기위해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365권의 방대한 양이 되었으며 실용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성종본 범례에서는 중복된 내용의 삭제와 약간 다른 내용의 기록을 간단히 하는 방법 등을 통해 방대한 양을 축소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다. 이는 세조가 평소 세종본의 부족한 부분인 실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성종본의 범례는 세조본의 교정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이 방법을 통해 365권의 巨帙이 266권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은 『의방유취』 편찬 작업을 재현해 보고, 범례에 나타난 내용 축약 과정 전후의 분량을 비교해보면 알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보겠다.

## 2) 작업 기간

세종본의 완성 기간은 1443-1445로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세조본은 1459-1464로 5년 정도의 기간이다. 단순히 편찬 기간만을 본다면 세조본이 더욱 공을 들였음을 알 수 있다.

## 3) 엄격한 교정 작업 관리

비현합(丕顯閤)에 나아가니, …… 술자리를 베풀고 『병서(兵書)』의 찬주(纂註)와 의서 유취(醫書類聚) 등의 일을 의논하였다.<sup>50)</sup>

이조(吏曹)에 전지하여 손소(孫昭) 등 10인을 파직(罷職)시키고, 유요(柳瑤) 등 7인을 파직시키고 동시에 전사(前仕)를 삭제(削除)하고, 한치량(韓致良) 등 46인의 전사를 삭제하고, 안극상(安克祥) 등 11인은 고신(告身)을 빼앗았는데, 『의방유취』를 교정(校正)함에 있어서 많은 착오(錯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sup>51)</sup>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세조는 평소에도 『의방유취』의 교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며, 교정 작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용성을 강조한 축약 과정이 방서의 수집 작업에 비해 어려웠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 Ⅲ. 결론

세종대왕의 명으로 1437-1439에 조선내외의 의서를 모아 1443-1445에 걸쳐서 365권의 草稿本 『의방유취』(世宗本)가 완성되었다. 세조는 1459년 양성지에게 『의방

文殿·홍문관(弘文館)을 세우고 모두 겸관(兼官)을 설치하여 출납을 맡기자고 의논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숭문전(崇文殿)을 세운다면 후세(後世)의 인주(人主)들 가운데 혹시 시문(詩文)을 짓기를 좋아하여 오로지 술작(述作)만을 일삼을 자가 있을까봐 따를 수가 없다. 장서각(藏書閣)을 홍문관(弘文館)으로 한다면 그것은 좋다. 거기에 설치하는 겸관(兼官)은 대제학(大提學) 1명, 제학(提學) 1명, 직제학(直提學) 1명, 직관(直館) 1명, 박사(博士) 1명, 저작랑(著作郎) 1명, 정자(正字) 2명으로 하라.”

43) 김종철, 조선전기 국가적 편찬사업에서의 양성지의 위상과 역할, 『동양예학』 제16집, 동양예학회, 2007, p.129.

44) 최근덕, 둘째 양성지의 생애와 경제사상, 유교사상연구 Vol.22, 한국유교학회, 2005, pp.15-18.

아래의 요약한 내용은 이 논문에서 발췌함.

45) 『訥齋集』, 권1, 「論君道十二事」, 且東方之人徒知有中國之盛而不知考東國之事甚爲不可 乞以前朝太祖之救民 成宗之定制 顯宗之守成 文宗之養民 爲法…….

동방의 사람이 한갓 중국에 성한 것이 있는줄만 알고 동국의 일을 상고(詳考)할줄 알지 못하니 대단히 옳지 못하다. 바라건대 전조(前朝) 태조의 구민(救民)이나 성종의 정제(定制), 현종의 수성(守成), 문종의 양민(養民)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늘제집 해석은 각주 44번의 논문을 인용함.

46) 『訥齋集』, 권1, 「論君道十二事」, 吾東方。世居遼水之東。號爲萬里之國。三面阻海。一面負山。區域自分。風氣亦殊。檀君以來。設官置州。自爲聲教。前朝太祖作信書教國人。衣冠言語悉導本俗。若衣冠言語與中國不異。則民心無定。

우리 동방은 대대로 요수(遼水)의 동쪽에 살아 만리지국이라 불리어졌다. 3면은 바다로 막혀있고 1면은 산을 둘러싸고 있어 구역이 저절로 나뉘어지며 풍기(風氣)도 또한 다르다. 단군이래 관경을 베풀고 고을도 두어 주체적인 교화의 덕을 폈다. 전조의 태조는 신서(信書)를 만들어 나라사람을 가르쳤고 의관(衣冠)과 언어는 모두 본래 지닌 풍속을 따랐다. 만약에 의관 언어가 중국과 다르지 않다면 민심이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47) 김종철, 조선전기 국가적 편찬사업에서의 양성지의 위상과 역할, 『동양예학』 제16집, 동양예학회, 2007, p.131.

48) <표 2> 『醫方類聚』의 凡例

안상우,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p.11.

49) 안상우,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p.49.

50) 『朝鮮王朝實錄』, 世祖 31卷, 9年 11月 8日(壬戌)

御丕顯閣。…… 設酌, 論「兵書」纂註, 『醫書類聚』等事。

51) 『朝鮮王朝實錄』, 世祖 32卷, 10年 1月 11日(甲子)

傳于吏曹: “孫昭等十人罷職, 柳瑤等七人罷職, 仍削前仕, 韓致良等四十六人削前仕, 安克祥等十一人奪告身。以校正『醫方類聚』, 多致錯誤故也。”



유취』를 교정하게 하여 1464년에 校正本 『의방유취』(世祖本)를 완성하였다. 1477년(성종 8)에 3년간의 板刻작업을 거쳐 30질의 266권 264책 初刊本 『의방유취』(成宗本)가 완성되었다. 세종본과 세조본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없고 성종본 만이 圖書療本 『의방유취』(乙亥活字 原刊本)로 남아 있다.

세조본 편찬의 시작은 세조가 양성지에게 『의방유취』 교정의 감독을 맡긴 1459년(세조 5)이며 이는 세종조에서 이어지는 작업의 연속이 아니라 세조 스스로의 의지와 필요성에 따라 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세조의 의학을 중시하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사상이 크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종본을 그대로 인쇄하지 않고 교정 작업을 통해 실용적인 책이 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365권이던 세종본이 266권 264책 92문으로 양적인 면에서 크게 축약이 되었다.

교정을 주관한 양성지는 세조로부터 국가문헌관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가 관여한 편찬물들은 조선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결과물이며, 『의방유취』 또한 민족주의적인 사상 위에 중국 의서와 차별되는 내용으로 교정된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세종본은 중국 明代以前の 醫籍 150여권의 책을 수집하고 모아 엮어서 365권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내용이 두 번 이상 인용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세종본의 목적이 당시 현존하는 방서의 수집에 있었기에 양이 많더라도 모든 내용을 담기위해 노력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 실용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성종본 범례를 보면 필요한 정보는 그대로 두고 불필요한 내용만이 삭제, 요약, 재편되면서 크게 내용이 압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조가 평소 세종본의 부족한 부분인 실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성종본의 범례는 세조본의 교정 작업에서 주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이 방법을 통해 365권의 巨帙이 266권으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校正本 『의방유취』(世祖本)는 단순히 중국의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다. 세종의 “醫方을 類에 따라 聚하라.”는 뜻을 이어 받아 세조의 “의학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사상”과, 양성지의 “민족주의적인 사상”이 담겨 있는 결과물로 조선의 주체성을 확립한 책이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朝鮮王朝實錄』
2. 『訥齋集』
3. 申舞植·崔桓壽, 『醫方類聚』에 대한 版本 연구. 『韓國韓醫學研究院論文集』 第3卷 第1號.
4. 안상우,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보고서, 1998.
5. 황임경·황상익, 세조의 『의약론』에 관한 연구, 의사학 제12권 제2호, 2003.
6. 申舞植, 『醫方類聚』의 편찬인물, 大韓醫史學會 醫史學 第8권 제2호, 1992년 12월.
7. 신동원, 조선시대의 의학론, 大韓醫史學會 醫史學 第13권 제1호, 2004년 6월.
8. 김종철, 조선전기 국가적 편찬사업에서의 양성지의 위상과 역할, 『동양예학』 제16집, 동양예학회, 2007.
9. 최근덕, 놀재 양성지의 생애와 경세사상, 유교사상연구 Vol.22, 한국유교학회, 2005.
10. 이종묵, 양성지의 서적 정책과 『訥齋集』의 간행 경위, 한국문학논총 제26집, 한국문학회, 2000.
11. 신양선, 15세기 조선시대의 국내 서적수집정책, 실학사상연구 제13집, 역사실학회, 1999.